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에서 1가구 2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 및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이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 증빙서류를 분양받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제5항에서 규정한 1가구 2주택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